

소방방재청고시제 2006-12 호 消防防災清高試製 2006-12 号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屋内消火栓設備の火災安全基準を次の通り改正する

2006년 12월 30일

소방방재청장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소화설비인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 1 条(目的) この基準は、消火設備である屋内消火栓設備の設置維持および安全管理に必要な事項を規定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제 2 조(적용범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9 조제 1 항 및 동법률시행

령(이하 “령”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 2 호의 규정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第 2 条(適用範囲) 消防施設設置維持および安全管理に関する法律(以下“法”という)第 9 条第 1 項および同法律施行令(以下“令”という。)星印 4 の消火設備の消防施設適用基準欄第 2 号の規定にともなう屋内消火栓設備は、この基準で定める規定により設備を設置して、維持・管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3 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第 3 条(定義) この基準で使う用語の定義は、次のとおりだ。

1. “고가수조”라 함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1. “高架水槽”とは、構造物または地形地物等に設置して自然落差の圧力で給水する水槽をいう。
2. “압력수조”라 함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2. “圧力水槽”とは、消火用水と空気を満たして一定圧力以上で加圧してその圧力で給水する水槽をいう。
3. “충압펌프”라 함은 배관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3. “チューアップポンプ”とは、配管内圧力損失にともなう主ポンプの頻繁な起動を防止するためにチューアップするポンプをいう。
4. “정격토출량”이라 함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4. “定格吐出量”とは、定格吐出力でのポンプの吐出する量をいう。
5. “정격토출압력”이라 함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5. “定格吐出圧力”とは、定格吐出量でのポンプの吐出する圧力をいう。

6. “진공계”라 함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6. “真空計”とは、大気圧以下の圧力を測定する計測器をいう。
  
7. “연성계”라 함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7. “連成器”とは、大気圧以上の圧力と大気圧以下の圧力を測定できる計測器をいう。
  
8. “체절운전”이라 함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8. “締切運転”とは、ポンプの性能試験を目的にポンプ吐出させる開閉バルブを閉じた状態でポンプを運転することをいう。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라 함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9. “起動用水圧開閉装置”とは消火設備の配管内圧力変動を検知して自動的にポンプを起動および停止させるもので、圧力チャンバーまたは起動用圧カスイッチ等をいう。
  
10. "급수배관"이라 함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옥내소화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10. "給水配管"とは、水源および屋外送水口から屋内消火栓放水口に給水する配管をいう。
  
11. “개폐표시형밸브”라 함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11. “開閉表示型バルブ”とは、バルブの開閉の有無を外部で識別が可能なバルブをいう。

제 4 조(수원) ①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2.6 m<sup>3</sup>(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1.2 m<sup>3</sup>)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第 4 条(水源) ① 屋内消火栓設備の水源は、その貯水量が屋内消火栓の設置個数が最も多い階の設置個数(5 個以上設置された場合には 5 個)に 2.6 立方m(ホースリール屋内消火栓設備の場合には 1.2 立方m)をかけた値以上にな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유효수량의 3 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屋内消火栓設備の水源は、第 1 項の規定により算出された有効数量の有効数量の 3 分の 1 以上を屋上(屋内消火栓設備が設置された建築物の主な屋上をいう。)に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次の各号に該当する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

1. 옥상이 없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1. 屋上がない建築物または工作物

2.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다만,  
2. 地階だけある建築物の場合

3. 제 5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3. 第 5 条第 2 項の規定による高架水槽が加圧送水装置で設置した屋内消火栓設備

4. 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4. 水源が建築物の屋根より高い位置に設置された場合

5.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가 10m 이하인 경우  
5. 地表面から当該建築物の上端までの高さが 10m 以下である場合

6. 주 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 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6. 主ポンプと同等以上の性能がある別途のポンプとして内燃機関の起動と連動して作動したり非常電源を連結して設置した場合

③ 옥상수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 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③ 屋上水槽(第 1 項の規定により産出された有効数量の 3 分の 1 以上を屋上に設置した設備をいう。以下同じ。)は、これと連結された配管を通して常時、消火水を供給できる構造である消防対象物である場合には、二以上の消防対象物があっても一つの消防対象物にだけこれを設置することができる。

④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屋内消火栓設備の水源を水槽で設置する場合には、消防設備の全用水槽で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

1. 옥내소화전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설비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1. 屋内消火栓ポンプのフードバルブまたは吸収配管の吸収口(垂直回転軸ポンプの吸収口を含む。以下同じ。)を他の設備(消防用設備以外のものをいう。以下同じ。)のフードバルブまたは吸収口より低い位置に設置した時

2. 제 5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2. 第 5 条第 2 項の規定による高架水槽から屋内消火栓設備の垂直配管に水を供給する給水口を他の設備の給水口より低い位置に設置した時

⑤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⑤ 第 1 項および第 2 項の規定による貯水量を算定するものにおいて、他の設備と兼用して屋内消火栓設備用水槽を設置する場合には、屋内消火栓設備のフートバルブ・吸収口または垂直配管の給水口と違った設備のフートバルブ・吸収口または垂直配管の給水口との間の数量をその有効数量とする。

⑥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⑥ 屋内消火栓設備用水槽は、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1. 点検に便利なところに設置すること。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凍結防止措置をしたり、凍結の憂慮がない場所に設置すること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水槽の外側に水量計を設置すること。ただし、構造上避けられない場合には、水槽のマンホール等を通して水槽の中の水の量を簡単に確認でき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4. 水槽の上段が結果を見届けて高い時には、水槽の外側に固定式はしごを設置すること。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5. 水槽が室内に設置された時には、その室内に照明設備を設置すること。

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6. 水槽の下の部分には、清掃用排水バルブまたは排水管を設置すること。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7. 水槽の外側の見やすいところに"屋内消火栓設備用水槽"と表示した表紙をすること。この場合、その水槽を他の設備と兼用する時には、その兼用される設備の名前を表示した表紙を一緒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8. 옥내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내소화전펌프가 설치되고 옥내소화전펌프에 제 5 조제 1 항제 14 호의 규정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屋内消火栓ポンプの吸収配管または屋内消火栓設備の垂直配管と水槽の接続の部分には、"屋内

消火栓設備用配管"と表示した表紙をすること。ただし、水槽と近い場所に屋内消火栓ポンプが設置されて屋内消火栓ポンプに第5条第1項第14号の規定による表紙を設置した時には、この限りでない。

제5조(가압송수장)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第5条(加圧送水装置) ① 電動機または内燃機関によるポンプを利用する加圧送水装置は、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1. 簡単に接近できて点検するのに十分な空間がある場所として火災および浸水などの災害による血年を受ける憂慮がない所に設置すること。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凍結防止措置をしたり凍結の憂慮がない場所に設置すること。

3. 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당해 층의 옥내소화전(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MPa(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0.25MPa)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ℓ/min(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60ℓ/min)

-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MPa** 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消防対象物のどの階にも当該階の屋内消火栓(5個以上設置された場合には5個の屋内消火栓)を同時に使う場合、各消火栓のノズル先端での放水圧力が**0.17MPa**(ホースリール屋内消火栓設備の場合には**0.25MPa**)以上で、放水量が130リットル/min(ホースリール屋内消火栓設備の場合には60リットル/min)以上となる性能のものであること。ただし、一つの屋内消火栓を使用するノズル先端での放水圧力が0.7MPaを超過する場合には、ホース結合の引入側に減圧装置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옥내소화전이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130ℓ/min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ポンプの吐出量は、屋内消火栓が最も多く設置された階の設置個数(屋内消火栓が5個以上設置された場合には5個)に130リットル/minをかけた量以上になるようにすること。
  5.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ポンプは専用ですること。ただし、他の消火設備と兼用する場合、それぞれの消火設備の性能に支障がない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
  6.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ポンプの吐出側には圧力計をチェックバルブの前でポンプ吐出側のフランジから近いところに設置して、吸入側には連成計または真空計を設置すること。ただし、水源の水槽がポンプの位置より高かったり垂直回転軸ポンプの場合には、連成計または真空計を設置しないことがある。
  7.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총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加圧送水装置には定格負荷運転時、ポンプの性能をテストするための配管を設置すること。ただし、チュンアップポンプの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
  8.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총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加圧送水装置には、締切運転時水温の上昇を防止するための逃がし配管を設置すること。ただし、チュンアップポンプの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
  9.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업무시설·학교·전시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등(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옥상수조를 설치한 대상은 제외한다)으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내에 설치할 수 있다.
  9. 起動装置には、起動用水圧開閉装置またはこれと同等以上の性能があるものを設置すること。ただし、アパート、業務施設、学校、展示施設、工場、倉庫施設または宗教施設等(第4条第2項の規定により屋上水槽を設置するものは除く。)の凍結の恐れがある場所においては、起動スイッチに保護板を取付けて屋内消火栓内に設置することができる。
  10.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ℓ 이상의 것으로 할 것

10. 起動用水圧開閉装置(圧力チャンバー)を使う場合、その容積は 100 リットル以上のものとすること。

11. 水源の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11. 水源の水槽がポンプより低い位置にある加圧送水装置には、次の基準による呼水装置を設置すること。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1) 呼水装置には、専用のタンクを設置すること。

나.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2) タンクの有効数量は、100 リットル以上とし、口径 15mm 以上の給水配管により当該タンクに水が補給されるようにすること。

12.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이 각층에 1 개씩 설치된 경우로서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起動用水圧開閉装置を起動装置として使う場合には、次の各目の基準によるチューンアップポンプを設置すること。ただし、屋内消火栓が各階に 1 ヶずつ設置された場合として消火用給水数)ポンプにも常時チューンアップが可能で、次の各目の性能を備えた場合には、チューンアップポンプを別に設置しないこともある。

가.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MPa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1) ポンプの吐出圧力は、その設備の最高位のホース結合具の自然アッポだ少なくとも 0.2MPa がより大きいようにし、加圧送水装置の定格吐出力と同じにすること。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옥내소화전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2) ポンプの定格吐出力は、正常な漏洩量より少なく、屋内消火栓設備が自動的に作動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十分な吐出量を維持すること。

13.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13. 内燃機関を使う場合には、次の基準に適合したものとすること。

가. 내연기관의 기동은 제 9 호의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

(1) 内燃機関の起動は、第 9 号の起動装置を設置し、または消火栓盤で遠隔操作が可能で起動を明示する赤色灯を設置すること。

나.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2) 制御班により内燃機関の自動起動および手動起動が可能で、常時充電されている蓄電池設備を備えること。

14. 가압송수장치에는 "옥내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14. 加圧送水装置には、"屋内消火栓ポンプ"と表示した表紙をすること。この場合、その加圧送水装置を他の消防設備と兼用する時には、その兼用される設備の名前を表示した表紙を一緒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15.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加圧送水装置が起動した場合には、自動で停止できない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 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高架水槽の自然落差を利用した加圧送水装置は、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1. 高架水槽の自然落差水頭(水槽の下段から最高階に設置された消火栓ホース接続口までの垂直距離をいう。)は、次の式により算出した数値以上になるようにすること。

$$H = h_1 + h_2 + 17 \text{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H = h_1 + h_2 + 17 \text{ (호스리얼屋内消火栓設備の場合には 25)}$$

H : 필요한 낙차(m)

$h_1$  : 소방용호스 마찰손실 수두(m)

H: 必要な落差(m)

$h_1$ : 消防用ホース摩擦損失水頭(m)

$h_2$  :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h_2$ : 配管の摩擦損失水頭(m)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2. 高架水槽には、水位計、排水管、給水管、オーバーフロー管およびマンホールを設置すること。

③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③ 圧力水槽を利用した加圧送水装置は、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1. 圧力水槽の圧力は、次の式により算出した数値以上とすること。

$$P = p_1 + p_2 + p_3 + 0.17 \text{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0.25)} p_1 :$$

$P$  : 필요한 압력(MPa)      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 수두압(MPa)

$p_2$  :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MPa)       $p_3$  : 낙차의 환산 수두압(MPa)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2. 圧力水槽には、水位計、給水管、排水管、補給管、マンホール、圧力計、安全装置および圧力低下防止のための自動式空気圧縮機を設置すること。

제 6 조(배관)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내 사용압력이 0.12MPa 이상일 경우에 등)

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第 6 条(配管等) ① 配管は、ペ・クアニオン炭素鋼管(KS D 3507)または配管内使用圧力が0.12MPa以上の場合には、圧力船寛容炭素鋼観(KS D 3562)、これと同等以上の強度、耐食性および耐熱性を持ったことでなければならない。

②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시험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第 1 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場所には、消防防災庁長が定めて告示する性能試験技術基準に適合した消防用合成樹脂配管で設置することができる。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1. 配管を地下に埋設する場合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2. 他の部分と耐火構造で区切られたダクトまたはフィートの内部に設置する場合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3. 天井(上階がある場合には、上階底の下段を含む。以下同じ。)と天井板を不燃材料または準不燃材料で設置してその内部に湿式で配管を設置する場合

③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③ 給水配管は、専用で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屋内消火栓の起動装置の操作と同時に他の設備の用途に使う配管の送水を遮断でき、屋内消火栓設備の性能に支障がない場合には、他の設備と兼用することができる。

④ 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④ ポンプの吸入側配管は、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1. 空氣溜まりがない構造にし、ろ過装置を設置すること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총압펌프를 포함 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2. 水槽がポンプより低く設置された場合には、各ポンプ(チューンアップポンプを包含する)ごとに水槽から別に設置すること。

⑤ 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3 m/s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 m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m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 m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ポンプの吐出側主配管の口径は、流速が 3m/s 以下になることができる大きさ以上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屋内消火栓放水口に連結される主配管の口径は 40 mm(ホースリール屋内消火栓設備の場合には 25 mm)以上とするべきで、主配管の垂直配管の口径は 50 mm(ホースリール屋内消火栓設備の場合には 32 mm)以上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⑥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mm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⑥ 連結送水管設備の配管と兼用する場合の主配管の口径 100 mm 이상、放水口に連結される配管の口径は、65 mm以上の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⑦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⑦ ポンプの性能は、締切運転時の定格吐出圧力の 140%を超過しなく、定格吐出量の 150%で運転時定格吐出圧力の 65%以上になるべきで、ポンプの性能試験配管は、次の各号の基準に適合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1. 性能試験配管は、ポンプの吐出側に設置された開閉バルブ以前で分岐して設置し、流量測定装置を基準としてピラ直管部に開閉バルブを後段直管部には流量調節バルブを設置すること。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2. 流量測定装置は、性能試験配管の直管部に設置するものの、ポンプの正格吐出量の 175%以上測定できる性能があること。

⑧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mm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加圧送水装置の締切運転時の水温上昇を防止するために、チェックバルブとポンプ間で分岐した口径 20 mm以上の配管に締切圧力未滿で開放される 릴리프 밸브를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⑨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⑨ 凍結防止措置をしたり、凍結の憂慮がない場所に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⑩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⑩ 給水配管に設置されて給水を遮断できる開閉バルブ(屋内消火栓放水口を除く。)は、開閉表示型で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ポンプの吸入側配管には、バタフライバルブ以外の開閉表示型バルブ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⑪기계실 • 공동구 또는 덕트에 설치되는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⑪ 機械室、共同溝またはダクトに設置される配管は、他の設備の配管と簡単に区分することができる位置に設置したり、その配管表面または配管保温材表面の色は、赤色で消防用設備の配管であることを表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⑫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⑫ 屋内消火栓設備には、消防車からその設備に送水できる送水口を次の各号の基準によって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할 것

1. 消防車が簡単に接近できて露出した場所に設置すること。

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送水口から主配管に達する連結配管には、開閉バルブを設置しないこと。ただし、スプリンクラー設備、水噴霧消火設備、泡消火設備または連結送水管設備の配管と兼用する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地面から高さが 0.5m 以上 1m 以下の位置に設置すること。

4. 구경 65 mm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4. 口径 65 mm의 差込型 또는 ねじ型 とすること。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 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5. 送水口の近い部分に自動排水バルブ(または直径 5 mmの排水溝)およびチェックバルブを設置すること。この場合、自動排水バルブは、配管内の水がよく陥る位置に設置すること、排水によって他の物または場所に被害を与えない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제 7 조(함 및 방수구 등)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第 7 条(箱および放水口等) ① 屋内消火栓設備の箱はも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함의 재질은 두께 1.5 mm 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4 mm 이상의 합성수지재로 하고, 문짝의 면적은 0.5 m<sup>2</sup> 이상으로 하여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箱の材質は、厚さ 1.5 mm以上の鋼板または厚さ 4 mm以上の合成樹脂材とし、扉の面積は、0.5 m<sup>2</sup>以上としてバルブの操作、ホースの収納等に十分な余裕を持てるようにすること。連結送水管の放水口を一緒に設置する場合にもまた同じだ。
2. 함의 재질이 강판인 경우에는 염수분무시험방법(KS D 9502)에 따라 시험한 경우 변색 또는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합성수지재인 경우에는 내열성 및 난연성의 것으로서 80℃의 온도에서 24 시간 이내에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
2. 箱の材質が鋼板である場合には、塩水噴霧試験方法(KS D 9502)によりテストした場合、変色または腐食されない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合成樹脂材である場合には、耐熱性および難燃性のものとして 80℃の温度で 24 時間以内に熱による変形がないものとする。
3. 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2 항제 1 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 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 할 수 있다.
3. 第 1 号および第 2 号の規定にかかわらず、第 2 項第 1 号の基準を超過する場合、または壁が設置されない大型空間の場合は、次の各目の基準により設置することができる。

가. 호스 및 관창은 방수구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함을 설치하여 비치 할 것.

(1) ホースおよび管槽そうは、放水口の最も近い場所の壁または柱などに箱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

나. 방수구의 위치표지는 표시등 또는 축광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토록 할 것.

(2) 放水口の位置表示は、表示灯または蓄光塗料等で常時確認が可能であること。

②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屋内消火栓の放水口は、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지하가층 터널의 경우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를 주행방향의 측벽길이 50m 이내마다 설치할 수 있다.
1. 消防対象物の階ごとに設置するものの、当該消防対象物の各部分から一つの屋内消火栓放水口

までの水平距離が 25m(ホースリール屋内消火栓設備の場合には 15m)以下になるようにすること。ただし、地下街中トンネルの場合には、屋内消火栓放水口を走行方向の側壁の長さ 50m 以内ごとに設置することができる。

2. 바닥으로부터の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底からの高さが 1.5m 以下になるようにすること。

2. 호스는 구경 40 m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mm) 이상의 것으로서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있는 길이에 설치할 것

3. 호스는、口径 40 mm(ホースリール屋内消火栓設備の場合には、25 mm)以上のものとし、て消防対象物の各部分まかれることができる長さで設置すること。

4.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4. ホースリール屋内消火栓設備の場合、そのノズルには、ノズルを簡単に開閉できる装置を付着すること。

③ 표시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③ 表示灯は、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 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1. 屋内消火栓設備の位置を表示する表示灯は、箱上部に設置するものの、そのあかりは、取付面から 15° 以上の範囲内で取付地点から 10m 以内のどこでも簡単に識別できる赤色灯とすること。

2.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2. 加圧送水装置の始動を表示する表示灯は、屋内消火栓箱上部またはその直近に設置するものの赤色灯とすること。

3. 제 1 호의 규정에 따른 적색등은 사용전압의 130%인 전압을 24 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에도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아니할 것

3. 第 1 号の規定による赤色灯は、使用電圧の 130%である電圧を 24 時間連続して加える場合にも断線、顕著な光束変化、電流変化などの現象が発生しないこと。

④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한다.

④ 屋内消火栓設備の箱には、その表面に"消火栓"という表示と、その使用要領を記載した表示板を付けなければならない。

제 8 조(전원) ① 옥내소화전설비에는 그 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 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第 8 条(電源) ① 屋内消火栓設備には、その消防対象物の受電方式により次の各号の基準による常用電源回路の配線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1. 低圧受電である場合には、引入開閉器の直後で分岐して専用配線とするべきで、専用の電線管に保護されるようにすること。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 차측의 주차단기 1 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 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 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 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 1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特別高圧受電または高圧受電の場合には、電力用変圧器2次側の主遮断機1次側で分岐して専用配線とするもの、常用電源の常時供給に支障がない場合には、主遮断機2次側で分岐して専用配線すること。ただし、加圧送水装置の定格入力電圧が受電電圧と同じ場合には、第1号の基準に従う。

②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의 옥내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 제 67 조의 규정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次の各号の1に該当する消防対象物の屋内消火栓設備には、非常電源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2以上の変電所(電気事業法第67条の規定による変電所をいう。以下同じ。)で電力を同時に供給受けることがで、一つの變電所から電力の供給が中断される時には、自動で他の變電所から電源を供給されるように常用電源を設置した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 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 이상인 것

1. 地階を除いた階数が7階以上として延面積が2,000㎡以上であること。

2. 제 1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 다만, 차고·주차장·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의 바닥면적은 기준면적에서 제외한다.

2. 第1号に該当しない消防対象物として、地階の底面積の合計が3,000㎡以上であること。ただし、車庫、駐車場、ボイラー室、機械室、電気室およびこれと類似の場所の底面積は、基準面積から除外する。

③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③ 第2項の規定による非常電源は、自家発電設備または蓄電池設備(内燃機関によるポンプを使用する場合には、内燃機関の起動および制御用蓄電池をいう。)として、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1. 点検に便利で、火災および浸水などの災害による被害を受ける憂慮がない所に設置すること。

2.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 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2. 屋内消火栓設備を有効に20分以上作動するべきであること。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3. 常用電源から電力の供給が中断された時には、自動で非常電源から電力を供給され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4. 非常電源の設置場所は、他の場所と防火区画すること。この場合、その場所には非常電源の供給に必要な機構や設備外のもの(熱併合発電設備に必要な機構や設備は除く。)を置いてはなら

ない。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5. 非常電源を室内に設置する時には、その室内に非常照明灯を設置すること

제9 조(제어 ①옥내소화전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  
반)

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  
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9条(制御盤) ① 屋内消火栓設備には、制御盤を設置するものの、監視制御盤と動力制御盤で区分  
して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次の各号の1に該当する屋内消火栓設備の場合には、監視制  
御盤と動力制御盤を区分して設置しないこともある。

1. 제 8 조제 2 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설비

1. 第8条第2項の規定に該当しない消防対象物に設置される屋内消火栓設備

2.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2. 内燃機関による加圧送水装置を使用する屋内消火栓設備

3.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3. 高架水槽による加圧送水装置を使用する屋内消火栓設備

②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예는 제 3 호 및 제 6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 1 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② 監視制御盤の機能は、次の各号の基準に適合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第1項各戸の1に該当する場合には  
1項各号の一に該当する場合には第3号および号第6号の規定を適用しない。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1. 各ポンプの作動の有無を確認できる表示灯および音響警報機能が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各ポンプを自動および手動で作動させるなければならない。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자동 또  
하고, 는 수동으로 상용전원 또는 비상전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

3. 非常電源を設置した場合には、常用電源および非常電源の供給の有無を確認するべき  
で、自動または手動で常用電源または非常電源での転換が可能なこと



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4. 水槽または水量タンクが低水位になった時、表示灯および音響で警報すること。
4. 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5. 各確認回路(起動用水圧開閉装置の圧カスイッチで、水槽または水量タンクの監視回路をいう。)ごとに導通試験および作動試験ができればならないこと。
6.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6. 予備電源が確保されて予備電源の適合の有無をテストできるものであること。

③감시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③ 監視制御盤は、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1. 火災および浸水などの災害による被害を受ける憂慮がない所に設置すること。
2. 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예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監視制御盤は、次の各号の基準による専用室中に設置すること。ただし、第1項各戸の1に該当する場合と、工場、発電所などで設備を集中制御、運転する目的で設置する中央制御室内に監視制御盤を設置する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
-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mm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mm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mm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 한다)로 된 4 m<sup>2</sup> 미만의 불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 나. 피난층 또는 지하 1 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 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 층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옥내소  
화전설  
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

ア 他の部分と防火区画をすること。この場合、専用室の壁には機械室または電気室等の監視のために厚さ 7 mm以上の窓ガラス(厚さ 16.3 mm以上の接合ガラスまたは厚さ 28 mm以上のペアガラスを包含する。)になった 4 平方 m 未満の据え付け窓を設置することができる。

イ 避難階または地下 1 階に設置すること。ただし、次の 1 に該当する場合には、地上 2 階に設置したり、地下 1 階以外の地階に設置することができる。

(1) 건축법시행령 제 35 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 구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1) 建築法施行令第 35 条の規定により特別避難階段が設置されてその階段(付室を含む。)出入口から歩行の種 5m 以内に専用室の出入口がある場合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2) アパートの管理棟(管理棟がない場合には警備室)に設置する場合

나.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우 非常照明灯および吸排気設備を設置すること。

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 6 조의 규정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 5 호의 규정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 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エ 無線通信補助設備の火災安全基準(NFSC 505)第 6 条の規定による無線機器接続端子(英星印 4 消火活動設備の消防施設適用基準欄第 5 号の規定による無線通信補助設備が設置された特定消防対象物に限る。)を設置すること。

마.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외에 화재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オ. 底面積は、監視制御盤の設置に必要な面積の外に、火災時消防隊員がその監視制御盤の操作に必要な最小面積以上とすること。

4. 제 3 호의 규정에 따른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4. 第 3 号の規定による専用室には、消防対象物の機械器具または施設などの制御および監視設備外のものをおかないこと。

④동력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④ 動力制御盤は、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1. 前面は赤色で作った"屋内消火栓設備用動力制御盤"と表示した表示を設置すること。

2. 외함은 두께 1.5 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2. 外箱は、厚さ 1.5 mm以上の鋼板またはこれと同等以上の強度および耐熱性能があるものとする。

3.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 3 항제 1 호 및 제 2 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3. その他の動力制御盤の設置に関しては、第 3 項第 1 号および第 2 号の基準を準用すること。

제 10 조(배선 등) ①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 67 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 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第 10 条(配線等) ① 屋内消火栓設備の配線は、電気事業法第 67 条の規定による技術基準で定めたものの他に、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非常電源から動力制御盤および加圧送水装置に達する電源回路の配線は、耐火配線とすること。ただし、自家発電設備と動力制御盤が同じ室に設置された場合には、自家発電機からその制御盤に至る電源回路の配線は、この限りでない。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常用電源から動力制御盤に達する配線、その他の屋内消火栓設備の監視、操作または表示灯回路の配線は、耐火配線または耐熱配線とすること。 ただし、監視制御盤または動力制御盤中の監視、操作または、表示灯回路の配線は、この限りでない。

②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별표 1 의 기준에 따른다.  
② 第 1 項の規定による耐火配線および耐熱配線に使われる電線および設置方法は、別表 1 の基準に従う。

③옥내소화전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③ 屋内消火栓設備の過電流遮断機および開閉器には、"屋内消火栓設備"と表示した表示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④옥내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④ 屋内消火栓設備用電気配線の両断および接続端子には、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表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단자에는 옥내소화전단자 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1. 端子には、屋内消火栓端子と表示した表紙を取り付けること。

2. 옥내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2. 屋内消火栓設備用電気配線の両断には他の配線と識別が容易なように表示すること。

제 11 조(방수구의 설치제외) 불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곳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 11 条(放水口の設置除外) 不燃材料で作られた消防対象物またはその部分として、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所には屋内消火栓放水口を設置しないこともある。

1.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1. 冷蔵倉庫の冷蔵室または冷凍倉庫の冷凍室

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2. 高温の槽設置された場所または、水と激烈に反応する物品の保存または、取り扱い場所

3. 발전소·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3. 発電所?変電所などとして電気施設が設置された場所

4. 식물원·수족관·목욕실·수영장(관람석 부분을 제외한다)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4. 植物園、水族館、風呂場、プール(観覧席の部分を除く。)または、その他のこれと似た場所

5.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5. 野外音楽堂、野外劇場またはその他のこれと似た場所

제 12 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등의 ①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

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第 12 条(水源および加圧送水装置のポンプ等の兼用) ① 屋内消火栓設備の水源をスプリンクラー設備、簡易スプリンクラー設備、火災早期鎮圧用スプリンクラー設備、水噴霧消火設備、泡消火設備および屋外消火栓設備の水源と兼用して設置する場合の貯水量は、各消火設備に必要な貯水量を合わせた量以上にな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これら消火設備のうち、固定式消火設備(ポンプ、配管と消火水または消火薬剤を最終放出する放出口が固定された設備をいう。以下の同じ。)が 2 以上設置されていて、その消火設備が設置された部分が防火壁と防火戸で区切られている場合には、各固定式消火設備に必要な貯水量のうち、最大のもの以上とすることができる。

② 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屋内消火栓設備の加圧送水装置で使うポンプをスプリンクラー設備、簡易スプリンクラー設備、火災早期鎮圧用スプリンクラー設備、水噴霧消火設備、泡消火設備および屋外消火栓設備の加圧送水装置と兼用して設置する場合のポンプの吐出量は、各消火設備に該当する吐出量を合わせた量以上にな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これら消火設備のうち、固定式消火設備が 2 以上設置されていて、その消火設備が設置された部分が防火壁、防火戸で区切られていて各消火設備に支障がない場合には、ポンプの吐出量のうち、最大のもの以上の量とすることができる。

③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屋内消火栓設備、スプリンクラー設備、簡易スプリンクラー設備、火災早期鎮圧用スプリンクラー設備、水噴霧消火設備、泡消火設備および屋外消火栓設備の加圧送水装置において、各吐出配管と一般給水用の加圧送水装置の吐出配管を相互連結して火災時使う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連結配管には開閉表示型バルブを設置してあるべきで、各消火設備の性能に支障がない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④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고,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屋内消火栓設備の送水口をスプリンクラー設備、簡易スプリンクラー設備、火災早期鎮圧用スプリンクラー設備、水噴霧消火設備、泡消火設備または連結送水管設備の送水口と兼用で設置する場合にはスプリンクラー設備の送水口の設置基準に従って、連結散水設備の送水口と兼用で設置する場合には屋内消火栓設備の送水口の設置基準に従うものとし、それぞれの消火設備の機能に支障がない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13 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 13 条(設置・維持基準の特例) 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は、既存建築物が建て増し、改築、大修繕されたり、用途変更される場合において、この基準が定める基準により当該建築物に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屋内消火栓設備の配管・配線などの工事が顕著に困難と認められる場合には、当該設備の機能および使用に支障がない範囲内で屋内消火栓設備の設置・維持基準の一部を適用しないこともある。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제 10 조제 2 항관련)  
 配線に使われる電線の種類および工事方法(第 10 条第 2 項関連)

1. 내화배선

사용전선의 종류	공 사 방 법
1. 600V 2 종 비닐절연 전선 2.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비닐외장 케이블 3. 클로로플렌외장케이블 4. 강대외장케이블 5. 버스덕트(Bus Duct) 6. 알루미늄피복 케이블 7. CD 케이블(Combined Duct Cable) 8. 하이파론 절연전선 9. 4 불화에틸렌 절연전선 10. 실리콘 절연전선 11. 연피케이블 12. 기타 공산품 품질규정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금속관 • 2 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 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 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을 배선용 샤프트 • 피트 • 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나.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 • 피트 • 덕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15 cm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 다른 설비의 배선사이에 배선지름(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1.5 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내화전선 • 엠아이케이블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비고 : 내화전선의 내화성능은 버어너의 노즐에서 75 mm의 거리에서 온도가 750±5℃인 불꽃으로 3 시간동 안 가열한 다음 12 시간 경과후 전선간에 허용전류용량 3A 의 퓨우즈를 연결하여 내화시험 전압을 가한 경우 퓨우즈가 단선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내화전선의 성능 시험기준에 적합한 것

2. 내열배선

사용전선의 종류	공 사 방 법
1. 600V 2 종 비닐절연 전선 2.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비닐외장 케이블 3. 클로로플렌외장케이블 4. 강대외장케이블 5. 버스덕트(Bus Duct) 6. 알루미늄피복 케이블 7. CD 케이블(Combined Duct Cable) 8. 하이파론 절연전선 9. 4 불화에틸렌 절연전선 10. 실리콘 절연전선 11. 연피케이블 12. 기타 공산품 품질규정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열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금속관 • 금속제 가요전선관 • 금속덕트 또는 케이블 (불연성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공사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 • 피트 • 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나.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 • 피트 • 덕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15 cm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사이에 배선지름(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지름이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1.5 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내화전선 • 내열전선 • 엠아이케이블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 다

비고 : 내열전선의 내열성능은 온도가 816±10℃인 불꽃을 20 분간 가한 후 불꽃을 제거하였을 때 10 초 이내에 자연소화가 되고,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180 이하이거나 가열온도의 값을 한국산업규격 mm

(KS F 2257)에서 정한 건축구조부분의 내화시험방법으로 15 분동안 380℃까지 가열한 후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가열로의 벽으로부터 150 mm 이하일 것.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내열전선의 성능시험기준에 적합할 것